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34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9. 7. 23(화) 11: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34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9년 7월 23일(화) 11: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 재적이사 : 총 11명
- 출석이사 : 총 9명
- 출석감사 : 총 2명

사무국장이 제34회 임시이사회에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회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당연직 임원 변경 보고
 3. 재단 운영 보고
 4.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회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88호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189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

이사회장은 제188호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제189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을 관련성이 있는 안건으로 병합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신규 장학사업 운영 등을 위한 신규인력 2명의 증원 예산을 반영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증액 되는 예산은 6급 신규직원채용 인건비 및 경비 등 30,259천원이며, 당초 세입 실행예산 총계 12,606,873천원에서 시 출연금 30,259천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 세입 예산 총계는 12,637,132천원이며, 당초 세출 실행예산 총계 12,606,873천원에서 사무국 운영경비 30,259천원이 증액되어 12,637,132천원임을 설명하다. 이어 제189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19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정된 서울시 출연금 30,259천원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2명의 신규인력 증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회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88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제189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90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제191호 장학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90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과 제191호 장학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것을 관련 성 있는 안건으로 병합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장학지원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을 조례와 일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정관 및 장학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현행 정관 제1조(목적) 및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를 개정하고, 장학사업 운영규정 제2조(장학사업의 종류) 및 제3조(지원대상)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장학재단의 설립근거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정관 및 장학사업 운영규정의 일부 문구가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0호 정관일부 개정에 관한 건과 제191호 장학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92호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92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금지를 위해 제11조(채용방법) 개정, 시험 외부위원 선정기준 강화 및 시험위원의 제척·회피를 의무화하기 위해 제11조의 2(시험위원 임명) 개정, 채용비리관련 보직 제한을 위해 제18조(보직) 개정,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마련 및 채용비리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기 위해 제48조(징계양정기준) 개정, <별표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개정, <별표 2의 1 채용비위자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15조(수습임용)제2항 제3호는 상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2호 인사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93호 2019년 안전 기본계획 심의의 건

이사장이 제193호 2019년 안전 기본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서울

장학재단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서울시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은 첫 시행으로 7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안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재단 내부 안전조직 체계 및 외부 협조체계 운영, 위기경보에 따른 단체별 조치체계, 안전 경영 활동계획, 직원 교육 훈련계획이라고 설명하다.

○○○ 이사가 재단은 임차 건물로 안전사항과 밀접성이 약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호 2019년 안전 기본계획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9년 7월 23일